영등포구의회 제204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』

檢討報告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7. 10. 23.

行政委員會 專門委員 崔光黙

『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 과징금징수조례 폐지조례안』 檢討報告書

1. 경 과

의안 제272호로 2017년 10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관광진흥법」의 개정으로 과징금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한 법률의 명시적 위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,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」는 폐지한다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관광진흥법」,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

5. 검토의견

○ 이 조례안은 「관광진흥법」의 개정으로 과징금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한 법률의 명시적 위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,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관광시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」를 폐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 조례 폐지 전 미결된 사항은 없는지 검토 후 폐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1

관광진흥법

[시행 1995.1.1.] [법률 제4796호, 1994.12.22., 타법개정]

- 제19조 (과징금의 부과) ①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자가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 <u>다만,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·직할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에게 권한이 위임(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)된 경우에는 당해 도지사나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</u> <개정 1994·8·3>

2

관광진흥법

[시행 2017.7.18.] [법률 제14525호, 2017.1.17., 타법개정]

- 제37조(과징금의 부과) ①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제35 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(過徵金)을 부과할 수 있다. 〈개정 2009.3.25.〉
-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·정도 등에 따른

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 〈개정 2013.8.6.〉

3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

제19조(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「국세징수법」 등의 준용) 지방세외수입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 등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압류금지 재산에 관하여는 「국세징수법」 제3장제2절,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, 재산유형별 압류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4절부터 제7절까지, 교부청구 및참가압류의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9절,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10절 및 제11절을 준용하고,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「지방세징수법」 제106조를 준용한다. 〈개정 2016.12.27.〉